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73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위성곤·박해철·정일영

박지원 • 오기형 • 권향엽

정진욱 • 이학영 • 김기표

황정아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중립성 보장을 핵심 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직무의 범위와 중 대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위원회와 사 무처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운 영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나책임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자체 감사기능만으로는 반복되는 조직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음.

이에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함으로

써, 위원회 조직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동시에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관위 조직 전반의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조제1항).
- 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제1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道選擧管理委員會"를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

- 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한다.
 -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만료되는 때에는 사무총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명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 또는임명한다.
 -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 2.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 3.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명
 - ③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사 결과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 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舉管理委 第5條(委員長) ① -----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 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 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 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 · 상임위원 ·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 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 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 게 한다.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擧管理 | 第6條(常任委員) ① 시・도선거관 委員會와 市・道選擧管理委員 리위원회-----

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 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 ③ (생략)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 략)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 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 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 으로 하며, 市・道選擧管理委員 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 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② (생략)

<신 설>

	-
	_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고	ŀ
같음)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
임위원은	_
	_
	_
<u>.</u>	

- ③ (현행과 같음)
-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만, 사무총장인 중앙선거관리위

③ ~ ⑥ (생 략)

① <u>제10항</u>의 사무처장 및 <u>제11</u> 항의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 과 <u>제16항</u>의 委囑幹事는 당해 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 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신 설>

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사무총장의 임기도 만
료되는 것으로 본다.
$\underline{4} \sim \underline{0}$ (현행 제3항부터 제 1
6항까지와 같음)
<u>⑱ 제11항제12</u>
<u> </u>
<u>제17항</u>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
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3명과 중
<u>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u>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명으로 하며, 중앙선거관

리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

다.

<u>명</u>

- 2.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 3.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명
- ③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사 결과의 처리,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